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노상안정기

노반 구성 재료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면 위를 주행하면서 토사를 파쇄 또는 혼합하여 균일한 토질이 되도록 노반을 처리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노상안정기 종류 및 작업 특성

장비 자체에 주행장치를 탑재한 **자주식**과 트랙터나 다른 건설기계가 끌고 가는 **견인식**으로 구분되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자주식 노상안정기만 건설기계로 분류한다.**

자주식



- 자체 동력과 주행 장치를 갖추고 있어 현장 내에서 이동 및 작업 위치 변경 가능
- 주행하며 절삭, 안정재 살포, 물 분사, 혼합 등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안정재와 토양이 균일하게 섞여 품질 관리가 탁월
- 고속도로 공항 활주로 등 대규모 공사에 적합

견인식



- 자체 주행 장치가 없어, 트랙터 등 다른 건설 장비가 끌어서 이동하는 방식
- 별도 살수 및 살포 장비가 필요하여 공정이 복잡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안정재와 토양이 균일하게 섞이지 못해 품질 편차 발생
- 소규모 혹은 회차 작업에 적합



노상안정기 주위를 이동 중 끼임

도로공사 현장에서 노상안정기 옆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접근해 오던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장비 사이에 끼임

원인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통제 미 실시

대책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금지 조치 철저



노상안정기 작업 시 주의사항

- 1 덤프트럭 운전자가 협업 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필요하고, 덤프트럭에는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유도 신호수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대피 및 기계 후진 작업 시 호각 또는 수신호를 통해 안전하게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근접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및 작업방법 관련하여 사전협의한다.
- 3 현장 내에서 장비의 운전 작업 또는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행로의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작업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다.



필수 안전보건교육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 대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전체면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 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 방법** • 작업 배치 전
- 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체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내용** •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제40조, 제86조, 제89조, 제91조 ~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96조 ~ 제206조
- ☞ 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